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 안 번 호 2070

제출년월일: 2020년 12월 16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제11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

○ 발행대상 : 재난관리기금 조성

○ 발행금액 : 3,000억원

○ 필 요 성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1조 및 제11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 작성자 :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최송천(☎2133-8041)